

## 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# 전문위원 검토보고

1.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 · 운영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#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- 1. 발 의 자: 윤 홍 창 의원 외 6인
-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  - O 발의일자: 2015년 02월 23일
  - O 회부일자: 2015년 02월 24일

#### 3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41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설치 및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학교설립 및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, 학생수용,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 등제반 행·재정 업무와 관련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

#### 4. 주요내용

- 가.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.(안 제2조)
- 나. 교육행정협의회는 공동의장인 교육감과 도지사 2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는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는 매년 9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함.(안 제7조)

- 라. 협의회 운영 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 의견조정, 안건의 선정, 그 밖에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규정함.(안 제10조)
- 마. 교육장과 시장·군수가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규정함.(안 제12조)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제 41조의 "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"규정에 근거하여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유기적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"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"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,
- 21세기 세계화(globalization), 지방화(localization: glocalization)의 거시적 흐름속에서 세계 각국이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는 추진동력이라는 인식을 갖고,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추세에비추어 볼 때.
-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 간 교육·학예에 관한 협의를 제도화함 으로써, 상호의견 교류와 소통을 원활히 하고 상생과 협력을 공고히 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어,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O 다만, 교육행정협의회가 충청북도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충북도교육청 간 교육·학예에 관한 업무협력의 체계화와 실질적인 실효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의 세부추진 계획과 시행규칙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관계법령발췌

##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- 제41조(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.
  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·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

#### □ 양성평등기본법

-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부칙 <법률 제12698호, 2014.5.28.>

제2조(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.

# 비용 추계서

- 1. 비용 추계 내용
  - O 재정수반 요인
    - 「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제11조에 따른 예산 추계
- 2. 비용 추계
  - 「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이 시행되면 3,640천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

연도 구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	2018년도
충청북도 교육행정 협의회 운영비	3,640천원	3,640천원	3,640천원	3,640천원

- 3. 비용 추계 상세내역
  - O 기초자료 및 세부내역
    -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: 3,640천원
      - 용품비: 20,000원×10종×6회=1,200,000원
      - 현수막: 100,000원×2회=200,000원
      - 외부위원 참석수당: 70,000원×3명×2회=420,000원
      - 업무협의회비: 30,000원×17명×2회=1,020,000원
      - 실무협의회비: 20,000원×10명×4회=800,000원
- 4. 작성자 : 충북교육청 기획관 행정6급 장영철(220-2162)